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6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취득세 121,093,6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및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업을 영위하던 코스닥(KOSDAQ) 등록 법인이었고, 소외 C 주식회사는 의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이었는데, 이 사건 법인은 2015. 4. 1. C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회사명을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결국 피합병법인인 구(舊) C은 코스닥 등록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상장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해산된 구 C의 대주주였는데, 위 합병대가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 67.79%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취득세 본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5항 제8호를 적용하여 감면하되,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의 무신고가산세 121,093,6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121,060,560원)와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62,806,210원)를 부과·고지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79%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5항 제8호에 의하면, 2016. 12. 31.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4) 한편, 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의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의하면, 비록 취득세 본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면제를 받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의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이 사건 쟁점 조항과 그 이전의 조항(이 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종전 조항) 및 2015. 12. 29. 개정된 조항(이 사건 개정 조항)은 아래와 같다.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종전 조항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사건 개정 조항**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산출세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종전 조항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산출세액의 범위에 반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개정 조항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간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된다.

2)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적용되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를 이 사건 종전 및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납세의무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이 사건 개정 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조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 및 체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원고에게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과세요건도 달리할뿐더러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분으로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통해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산출세액이 감면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물건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다.

4) 법제처는 이 사건 종전 조항에서 이 사건 쟁점 조항으로 개정한 취지에 대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2016. 1. 1.) 부칙 제3조는 "제53조의2 개정 규정(이 사건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정 조항으로의 개정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7)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 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감면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감면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조항으로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취득세 본세가 면제되더라도, 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조치를 규율하여야 할 의무까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여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종전 조항이나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요건을 갖춘 자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면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제13635호, 2015.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